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성평등가족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9. 29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4. ~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1항제1호,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고용평등 정책의 기획·총괄

8. 여성 일자리 정책의 협의·조정

10.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7조제12항제4호 중 “예방에 관한 조사·연구”를 “예방 실태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백서 등 발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여성인력”을 “여성인재 발굴·활용 및 여성인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양립 정책 개발”을 “균형 제도 개발 및 문화 확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여성친화형”을 “성평등가족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

12.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

15. 여성 인적자원 분야 정책 개발 및 협의·조정

제7조제13항제1호 중 “경력단절여성등(이하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경력보유여성등(이하 “경력보유여성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을 각각 “경력보유여성

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

15.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·지원

16. 부 내 여성 일자리 사업 총괄·운영

제8조제14항제10호 및 제11호 중 “아이돌보미”를 각각 “아이돌봄사”로 한다.

별표 3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성평등정책실) ① ~ ⑩ (생략)	제7조(성평등정책실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⑪ ----- -----.
1. <u>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</u>	1. <u>고용평등 정책의 기획 · 총괄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</u>	8. <u>여성 일자리 정책의 협의 · 조정</u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10. <u>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 · 점검</u>	10. <u>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u>
⑫ ~ ⑮ (생략)	⑫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⑯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사 · 연구</u>	4. ----- ----- <u>예방 실태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백서 등 발간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여성인력 양성 · 활용에 관한 조사 · 연구</u>	6. <u>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인력</u> -----
7. <u>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 · 생활 양립정책 개발</u>	7. ----- ----- <u>균형 제도 개발 및 문</u>

8. <u>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</u> 9. ~ 11. (생략) 12. <u>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</u> · 지원 13. (생략) 14. <u>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</u> 발굴 및 지원 15. <u>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</u>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정책개발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경력단절여성등</u>(이하 “<u>경력단절여성등</u>”이라 한다)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·추진 2.·3. (생략) 4. <u>경력단절여성등의 직무역량</u>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5. <u>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적응</u>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 운	<u>화 확산</u> 8. <u>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</u> <u>총괄</u> 9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</u>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성평등가족형</u> ----- ----- 15. <u>여성 인적자원 분야 정책 개발 및 협의·조정</u> ⑬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경력보유여성등</u>(이하 “<u>경력보유여성등</u>”-----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<u>경력보유여성등</u>----- ----- 5. <u>경력보유여성등</u>----- -----
--	---

영	--
6. <u>경력단절여성등의</u> 창업 지원 에 관한 사항	6. <u>경력보유여성등</u> ----- -----
7. <u>경력단절여성등의</u>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	7. <u>경력보유여성등</u> ----- -----
8. ~ 13. (생 략)	8. ~ 1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4. <u>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</u>
<신 설>	15. <u>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· 지원</u>
<신 설>	16. <u>부 내 여성 일자리 사업 총 괄·운영</u>
⑭ ~ ⑰ (생 략)	⑭ ~ ⑰ (현행과 같음)
제8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 ~	제8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 ~
⑬ (생 략)	⑬ (현행과 같음)
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	⑭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아이돌보미</u> 양성·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	10. <u>아이돌봄사</u> ----- -----
11.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<u>아이돌보미</u> 인식개선 홍보	11. ----- -- <u>아이돌봄사</u> -----
12. ~ 14. (생 략)	12. ~ 14. (현행과 같음)
⑮ (생 략)	⑮ (현행과 같음)